

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4. 5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LINC+사업단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1.>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강좌 개설 및 운영
2. 창업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
3. 창업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지원
4. 학생창업펀드조성 지원
5.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
6.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[본조개정 2017.7.1.]

제3조(위원회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산학협력중점교수 및 매니저)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센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창업매니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7.1.>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LINC+사업단 지원금, 본교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7.7.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